국무총리 훈령 제349호

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운영사무소설치 ·운영규정안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운영사무소(이하 "사무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치 및 구성) ① 사무소는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에 둔다.

② 사무소는 사무소장 및 부소장 각 1인과 약간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 3 조 (기능)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

1.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회원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이론 및 실무교육 지원
2.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세세미나의 개최 지원
3. 제 1호 및 제 2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등 부수적 업무

제 4 조 (사무소장의 직무) ① 사무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조세교육센터 운영회의에 우리나라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.

② 사무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조세교육센터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중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한다.

③ 사무소장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의 지휘 ·감독하에 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제 5 조 (사무소장 및 부소장의 임용) ① 사무소장은 재정경제원소속

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한다.
② 부소장은 재정경제원소속 4급 공무원중에서 파견한다.

제 6 조 (업무의 지휘 ·감독) ① 사무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조세교육센터 운영회의에의 참석 등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함에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② 사무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조세교육센터 운영회의의 결정사항 및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사항 기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요사항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사무소장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·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한국조세연구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.

제 7 조 (보수 등) 사무소장 및 부소장의 보수는 재정경제원에서 지급하되, 한국조세연구원은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